

2024년 「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「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 17.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I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4. 4. 17.(수) ~ 5. 10.(금) 16:00까지
- 신청대상 :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¹⁾ 중 상시근로자 수²⁾ 50인 미만 사업체

※ 참여자격 제외 대상
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환경개선계획 기재 사항 관련 정부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
- 민원야기, 임금체불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
- 소비·향락업종 관련 기업(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종)
-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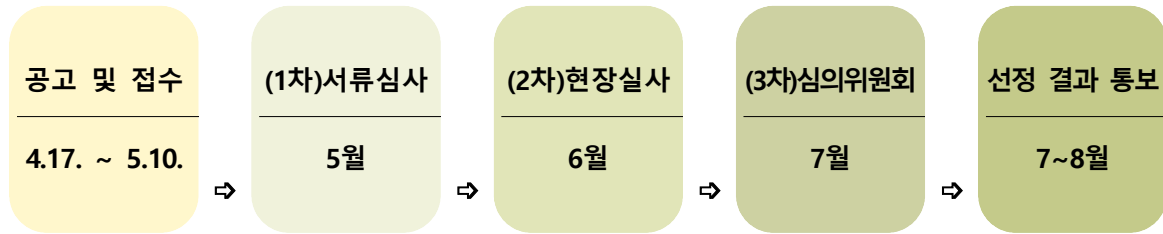
- 신청방법 : 통합접수시스템(apply.jobaba.net) 온라인 접수

- 홈페이지(<http://apply.jobaba.net>)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
-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
※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완료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건 발생 시 반드시 사업 전용 이메일 (safecorp@gjf.or.kr)로 별도 제출

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의한 중소기업

2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사업장의 근로자 수

○ 전형일정



※ 추진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인증혜택

-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(최소 300만원~최대 500만원)
-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(2년)
-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
- 道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(5점)
-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여 등

○ 제출서류

- [붙임1] 사업 신청서 1부
- [붙임2]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 계획서 1부
- [붙임3]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
- [붙임4~8]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-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(안전보건공단) 1부
-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(근로복지공단) 1부
-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(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 이수확인서, 위험성평가 인증서 등) 각 1부

II 심사 및 평가

- 평가절차 : (1차)서류평가 → (2차)현장평가 → (3차)선정 심의위원회
- 선정규모 : 총 30개사 내외
- 선정기준 : 서류평가, 현장평가, 선정 심의위원회의 단계별 평가 및 누적 점수 상위 30개 업체 선발
- 심사방법
 - (서류심사) 평가표에 따라 선정규모의 1.5배수(45개소) 선정
 - (현장심사) 서류심사 통과기업 대상 전문가 현장평가 진행
 - (선정 심의위원회)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업 선정

구 분	배점	평가대상	점검내용												
(1차)서류평가	30점	사업 신청 기업 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 신청요건 충족여부 확인 · 노동안전보건 관리 역량 평가 · 노동환경개선 계획 적정성 평가 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
(2차)현장평가	40점	서류평가 상위 45개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항목 세부 평가 및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검토 · 노동환경개선 신청 시설 노후 상태 확인 등 												
↓															
(3차)선정 심의위원회	40점	현장평가 완료 45개소	·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누적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정성평가 수행 후 3개 그룹 상위 30개소 선정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그룹</th> <th>1조</th> <th>2조</th> <th>3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순위</td> <td>1~5순위</td> <td>6~15순위</td> <td>16~30위</td> </tr> <tr> <td>지원금</td> <td>5,000천원</td> <td>4,000천원</td> <td>3,00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그룹	1조	2조	3조	순위	1~5순위	6~15순위	16~30위	지원금	5,000천원	4,000천원	3,000천원
			그룹	1조	2조	3조									
순위	1~5순위	6~15순위	16~30위												
지원금	5,000천원	4,000천원	3,000천원												

- ※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- ※ 평가 점수 합산 60점 이하 선정 불가
- ※ 서류 및 현장심사 평가 항목은 첨부파일 참고

III 선정 및 통보

- 선정일자 : 2024.7. ~ 8.(예정)
- 결과통지 : 최종 심사 이후 참여기업 일괄 안내
 개별 이메일 통보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고
- 향후일정
 - (노동환경개선 실행) 2024. 8. ~ 10.(예정)
 - (지원금 신청 및 지급) 2024. 9. ~ 11.(예정)
 - (인증서 수여식) 2024. 9. ~ 10.(예정)
 - (사후관리) 인증기간 내 연 1회 실시

IV 노동환경개선금 지원

- 지원대상 :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기업 30개사
- 지원내용 : 최종평가 순위에 따른 기업별 노동환경개선자금 차등 지급
(최소 300만원~최대 500만원)
 - ※ 노동환경개선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
 - ※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
- 활용처 :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, 안전장비 구입, 보건지원 등

구 분	지원 내용
시설개선	노후 작업장, 휴게공간, 구내식당, 화장실 개보수, 사무공간 개선 등
안전장비	안전 장비 구입 등(직종별 안전장비 적합여부 고려)
보건지원	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지원,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,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) 등

- ※ 안전 장비 외 물품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폭염, 혹한을 대비한 예방설비(이동식 에어컨, 냉온 조끼 등), 방역물품, 휴게공간 및 구내식당 개선을 위한 부대 물품의 경우 제한적 허용
- ※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(부지,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단순 소모품 구입 등) 지원 불가

V 기타사항

- 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(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)
-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,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의 위반 문제로 행정적,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
- 지원내용으로 시설개선을 신청한 기업은 시설의 소유관계 및 잔여 임차기간에 따라 개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
- 노동환경개선지원금은 지출 비용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
- 노동환경개선 지출금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시 지원 액수는 실비에 국한함
-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후관리,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문의처
 -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(☎ 031-270-9697)
 - 경기도 노동안전과 산업재해예방팀(☎ 031-8030-4555)

- 붙임 1. [붙임1~3]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신청 서식 각 1부.
2. [붙임4~8]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.
3. [참고1]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제출서류 목록표 1부.
4. [참고2]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평가표 1부. 끝.